

근로자와 일터의
능력을 키우는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
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**소속근로자**,
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
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
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
를 지원하는 제도

개요

- 실시 주체 :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주
- 실시 대상 : 15세 이상 근로자
(사업주는 훈련대상 비해당)
- 지원한도 :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
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,
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 지원

지원 대상

- 위탁훈련 :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에
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
- 자체훈련 :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등
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- 집체훈련 :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
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
(근무장소 제외)
- 현장훈련 :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
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
- 인터넷 원격훈련 : 웹상으로 훈련이
실시되는 훈련

훈련 종류



Level-up
Value-up

능력중심사회
일터의 배움문화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
- 훈련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HRD-net 훈련기관으로 가입
관할 고용센터에 전자서비스 이용신청
- 대규모 기업: 2일 16시간 이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: 1일 8시간 이상
- 학급당 정원 60명 이내일 것
- 직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취미활동
세미나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
하는 경우 인정시간에서 제외

인정 요건

신청 및 문의

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홈페이지
<http://gyeongnam.hrdkorea.or.kr>
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사업주훈련
네이버카페 <http://cafe.naver.com/gnhrd>

★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★

(창원지역/거제)

전화 : 055-212-7212

(진주,사천)

전화 : 055-212-7216

(마산,합안,창녕,의령,통영,고성,남해,하동,산정,
거창,함양,함진)

전화 : 055-212-7208

◎ 김해, 밀양, 양산지역은 부산지역본부 관할이므로
위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지역본부로
신청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훈련비
- 자체훈련:[우선지원] 자체표준훈련비*120%
[대규모] 자체표준훈련비*80%/50%
* 자체표준훈련비:직종별기준단가*시간*조정계수 *인원
- 위탁훈련:[우선지원]위탁표준훈련비*100%/90%
[대규모]위탁표준훈련비*60%/40%
* 위탁표준훈련비:직종별기준단가[실업자규정]*시간 *인원

지원금 종류

- 숙식비
- 훈련시간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시 지원
식비 1일 3,300원, 숙박비 1일 11,040원
1개월 한도 276,000원
- 훈련수당 [채용예정자훈련에 한함]
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에서
월 20만원까지 지원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



- 과 정 인 정 : 위탁훈련(훈련개시일 7일전-공휴일 제외)
자체훈련(훈련개시일 5일전-공휴일 제외)
- 실 시 신 고 : 훈련실시일 전일까지
- 확정자변경신고 : 훈련기간 별로 달라 지사 홈페이지 참고
- 수료보고 :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
- 비용신청 : 훈련종료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
30일 이내 일괄신청 [소멸시효: 3년]
- ◎ 신청 방법 : www.hrd.go.kr 온라인으로 신청